

「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규정」 개정 안내

1. 규정명 : 「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규정」 개정

2. 제정(변경)의 필요성 : 여신금융협회 ‘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안(2024. 11. 29 협회 이사회 의결)’ 을 반영하여 개정

3. 주요 제정(변경)내용 :

구 분	내 용
제19조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	중도상환수수료 산정·부과 사항 규정 및 공시관련 사항 등 신설

4.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: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권익 보호

5. 시행일자 : 2025년 1월 13일 (2024년 12월 24일 이사회 승인)

6. 적용 대상(범위) :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,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,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의한다.

(첨부)

「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규정」 개정대비표

개정전	개정후
<신설>	<p>제19조(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)</p> <p>①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·부과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산정·부과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출계약 체결 및 변경, 해지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 인건비 및 전산 시스템 운영비용은 산정·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 : 대출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 조달 및 운용 손실2. 미회수 행정비용 : 인지세, 감정평가수수료, 임대차조사수수료, 담보권 설정비, 기타 대출 취급에 소요되는 비용3. 미회수 모집비용 : 대출 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(대출모집인·딜러(자동차 판매직원)·대출모집 플랫폼·공인중개사에 지출한 수수료 등) <p>②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·부과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의 급격한 변동 방지2.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<p>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출상품의 특성 및 모집 채널 등을 구분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·부과하여야 하며,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2.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(부동산·기타)3.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<p>④ 회사는 대출계약의 해지가 아닌 단순조건 변경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·부과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

개정전	개정후
부칙<제정> ~ 부칙<2>	<좌 동>
	<p data-bbox="1038 344 1139 376">부칙<3></p> <p data-bbox="796 407 1366 566"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는 이 규정 시행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(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/p> <p data-bbox="796 595 1366 712">제2조(적용례) 제19조의 개정 내용은 약정 등에 따른 리스 및 공동대출, PF대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